

##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1)계약기간

-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 ②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변경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2) 계약목적

-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수납기준은 **첨부1. 이용료 부담에 대한 사항 [별표 1][별표 2]**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2) 그 밖의 비용부담액
  - ①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 월~금요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1)권리

-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계약이 만료된 경우
  - ②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④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기관은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첨부1. 이용료 부담에 대한 사항 (2020. 01. 01.기준)

[별표 1]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원)

| 구 분                  | 장기요양<br>1등급 | 장기요양<br>2등급 | 장기요양<br>3등급 | 장기요양<br>4등급 | 장기요양<br>5등급 | 인지지원<br>등급 |
|----------------------|-------------|-------------|-------------|-------------|-------------|------------|
| 3시간 이상<br>~ 6시간 미만   | 35,030      | 32,430      | 29,940      | 28,570      | 27,210      | 27,210     |
| 6시간 이상<br>~ 8시간 미만   | 46,960      | 43,500      | 40,150      | 38,790      | 37,410      | 37,410     |
| 8시간 이상<br>~ 10시간 미만  | 58,410      | 54,110      | 49,960      | 48,590      | 47,210      | 47,210     |
| 10시간 이상<br>~ 12시간 미만 | 64,350      | 59,610      | 55,070      | 53,680      | 52,320      | 47,210     |
| 12시간 이상              | 69,000      | 63,930      | 59,050      | 57,690      | 56,310      | 47,210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 재가급여     |
|------------------------------------------------------------------------------------------------------|----------|
| 일반                                                                                                   | 15%      |
| 기초수급권자                                                                                               | 0%       |
| 기타 의료수급권자<br>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하위난치성, 만성질환자)<br>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 또는 9% |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아·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바론푸드와 위탁급식 체결로 점심, 저녁 위탁함.

1식 : 3,000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가격은 변동 가능함)

간식비 : 1회 500원

(2) 아·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아·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일만원)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